

지급기간 및 주기

-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
※ 월할 계산하지 않음

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

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

지원대상

-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※ 지원 제외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지원요건

- 1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
-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
- 3 고용보험 가입
- 4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*

* 다만, ① 사업의 원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②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③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④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

Ⅷ. 참고사항 / 04. 신중년 적합직무 참조(85P)

지원수준 및 한도

- (지원수준)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원 또는 80만원 지원

유형	회차별 지원액 (3개월 단위)	연간총액
우선지원대상기업	240만원	960만원
중견기업	120만원	480만원

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- (지원인원 한도)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편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%(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), 단, 올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성립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(소수점 이하 버림,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) 이내로 지원

지급기간 및 주기

-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
※ 월할 계산하지 않음

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

지원대상

- 모든 사업주
※ 지원 제외 :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장래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(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)

지원요건

● **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*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(구직등록 필요)**

- ※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
 -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(ρ22 참고)
 -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: 중장년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, 성지역 거주자

● **구직등록은 고용센터(work-net)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**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, 고용지원센터,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
- 6개월 이상 고용유지

① **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**

- 고용일 또는 프로그램 참여기간중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

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

연번	취업지원프로그램 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	이수한 사람의 범위
1	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(고용노동부)	- (1) '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1 유형 중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총소득의 100%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2 유형의 청년유형제외)로서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. 단,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- (2) '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1 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2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로서 특별고용지원안정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포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불. 단,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
연번	취업지원프로그램 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	이수한 사람의 범위
2	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「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」 (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)	- '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'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(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'기준 총위소득'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)을 포함한다. - 단,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~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3	고령자재은행이 운영하는 「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」 (고용노동부)	- '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'을 마친 사람. - 단,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4	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(여성가족부)	-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
5	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「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」 및 「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」 (법무부)	- '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'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-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6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「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형)」 (고용노동부)	- '기술교육원 직업훈련'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- '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형)'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
7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」 (고용노동부)	- 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형)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. - 단,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8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「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」 (고용노동부)	- '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'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-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9	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「자활근로」 (보건복지부)	-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'자활 근로'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

연번	취업지원프로그램 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	이수한 사람의 범위
10	국방정책교육원이 운영하는 '기본교육'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'취업워크숍'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'직업교육훈련'(국방부, 국가보훈처)	- 국방정책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,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'취업워크숍'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- 직업교육훈련(사회적응교육, 직업교육훈련,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)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
11	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'취업지원프로그램(제도약)'(고용노동부)	-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'취업지원프로그램(제도약 프로그램)'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'기준 중위소득'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) 이하인 사람. - 다만,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12	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	-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기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
13	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'일반고 특화훈련과정'(고용노동부)	-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 제65조제1항에 따라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'일반고 특화훈련 과정'을 마친 사람
14	고용위기지역 이직자(고용노동부)	-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
15	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(고용노동부)	-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
16	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(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)	- 다음 40대 일자리 지원대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(1)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'내 소명터 프로그램' 및 '버스운전 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' (2)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'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'(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,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) 및 '40대 중장년 부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'
17	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(고용노동부)	- '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 할 수 있도록 맞춤형(2~3개월) 프로그램 제공
18	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(법무부)	-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'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'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

*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

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

-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(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이내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)

구 분	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
중증장애인	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
여성실업자	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(지원)대상자
심 지역 거주자	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

지원수준 및 한도

-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~60만원 지원

유 형	회차별 지원액 (6개월 단위)	연간총액
우선지원대상기업	360만원	720만원
대규모기업	180만원	360만원

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- (지원한도)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(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)

지급기간 및 주기

-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

※ 월할 계산하지 않음

* 다만,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중 기초생활수급자,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·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

지원 제외 근로자

4

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
* 다만, 「최저임금법」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

③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

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

*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지원

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별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
⑦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)

2 /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

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

* 다만, ① 사업의 원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②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③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④ 취업추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
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1 /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,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

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

* 다만, ① 사업의 원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②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취업추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등

*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

-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④ 중증장애인 ⑧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
- ② 국민취업지원제도(1 유형)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
 -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
 - ⑤ 결혼이민자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건설일용직 ⑨ 장애인 ⑩ 니트(NEET)족
 -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 - ① 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형훈련) ②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 -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 -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
 -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
 - ⑦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

*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

5

지원제외 사업주

*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

-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㉠중증장애인 ㉡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
- ② 국민취업지원제도(1 유형)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
 - ㉠ 기초생활수급자 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㉢ 복합이탈주민 ㉣ 신용회복지원자
 - ㉤ 결혼이민자 ㉥ 위기청소년 ㉦ 여성기장 ㉧ 건설일용직 ㉨ 장애인 ㉩ 니트(NEET)족
-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 - ㉠ 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형훈련) ㉡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-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-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
-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
-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
- ⑧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

*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통합

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
* 다만, 「최저임금법」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

③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4촌 이내 혈족인척

④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

⑤ 비상근 촉탁근로자

1 /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

-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, 국회, 공직유관단체 등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
- 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*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*

③ 일반유형·무도유형·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테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
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 / 일자리함께하기 지원

- ① ~ ⑤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와 동일
- ⑥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
- ⑦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

6

감원방지 의무

3 고용촉진장려금

-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②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(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)을 새로 고용한 경우

- 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까지(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)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,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

* 다만,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

- ㉡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, 정년, 계약기간만료,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

※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, 국내특귀기업 지원은 감원방지 의무 규정 적용하지 않음